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: 자치행정과

제정 1997·11· 8 조례 제214호 개정 2003· 2· 5 조례 제4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「이천시읍·면·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동(이하 "법정동"이라 한다)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행정운영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) 행정운영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3 · 2 · 5 조례 제437호〉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개정)「이천시 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창전동란 다음에 중포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증 포 동 증 포 동 49-16

별표중 관고동의 소재지란 "창전동 420-9"를 "관고동 6-1"로 한다.

[별표]

행정운영동의 명칭,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

(제2조 관련)

행정운영 동 명	동장 정수	관할구역(관할 법정동)
창전동	1	창전동 일원
증포동	1	안흥동, 갈산동, 증포동, 송정동 일원
중리동	1	중리동, 증일동, 율현동, 진리동, 단월동, 대포동 고담동, 장록동 일원
관고동	1	관고동, 사음동 일원